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3732 |
|------------|------|

발의연월일 : 2016. 11. 18.

발 의 자 : 유민봉 · 이명수 · 金成泰
김태흠 · 김성원 · 윤재옥
김성태 · 박성중 · 이현재
정태옥 · 정유섭 · 이채익
김규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현

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강화(안 제2조1의2호, 제12조 신설)

업무수행 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병가를 가거나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 정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 등의 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부상과 함께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안고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제4항 신설)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

을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안 제7조)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 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를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포함한 11명”을 “2명을 포함한 2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이 공

동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해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1. (생 략) <u><신 설></u> | 1. (현행과 같음) <u>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u>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 <u>④ (생 략)</u> |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
|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 ----- ----- ----- |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2명을 포함한 22명 -----.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이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3.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해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